

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명칭)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
	성명(대표자)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
	소재지(사업장)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	구분	[] 제조자 [] 수입자 []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
구분	제조·수입	[] 제조 [] 수입
	신규승인·재승인	[] 신규승인 [] 재승인
신청정보	제품명	살생물제품유형
	제형	유통기한
	표준사용량	사용방법
	제조시설 소재지	
재승인 신청정보	기존 승인번호	
	유효기간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[]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
[] 제21조제3항

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

<p>첨부서류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, 배합비율, 사용 목적 및 용도 나. 살생물제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. 제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의 명칭, 사용목적 및 용도(나노물질을 의도적으로 함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살생물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물리·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. 살생물제 제품의 용도, 주요 노출경로,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. 인체·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·위해성 정보 라. 효과·효능 마. 분류·표시 및 포장 바.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사.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3.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4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7항에 따른 제조·보관시설의 설치·운영 계획 또는 현황 6. 살생물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7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살생물제 제품 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: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. 살생물제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: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.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: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: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 사본 마.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: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	<p>수수료</p> <p>신규승인: 200,000원 (중기업은 100,000원 소기업은 40,000원)</p> <p>재승인: 100,000원 (중기업은 50,000원 소기업은 20,000원)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자등록증명(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: 화학물질안전원